

「수사준칙」 개정안, 「특사경 협력규정」 제정안 입법예고

-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
국민의 인권보장, 수사의 충실성·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령 마련 -

1. 개요

법무부는 10. 2. 시행 예정인 개정 「형사소송법」이 안정적으로 실무에 정착할 수 있도록 「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, 이하 ‘수사준칙’) 개정안과 「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, 이하 ‘특사경 협력규정’) 제정안을 마련하여 9. 4.까지 입법예고를 합니다.

이번에 입법예고 한 제·개정안은 대검찰청, 중대범죄수사청(개청준비단), 경찰청, 해양경찰청과의 협의 및 특별사법경찰관 소속 기관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하였습니다.

「수사준칙」 개정안은 ‘수사·기소의 분리’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❶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, ❷보완수사요구의 실효성 확보, ❸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 강화, ❹수사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, ❺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 등을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.

또한, 「특사경 협력규정」 제정안은 수사지휘 관계에서 상호 협력관계로 변화된 개정 「형사소송법」을 반영하여 ❶지도·조언 제도 구체화, ❷특별사법경찰관 수사역량 강화, ❸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협력 실질화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.

2. 수사준칙 주요 내용

□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수사절차에 범죄피해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.

- 먼저,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주요 협력 대상인 ‘중요사건’에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*를 추가하여 위 범죄들에 대하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실질적으로 협력**하며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* 성폭력,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, 아동학대, 가정폭력, 스토킹, 장애인학대, 노인학대

** 송치 전 수사사항, 증거 수집 대상, 법령 적용 등에 관한 상호 의견 제시·교환

- 불송치결정서에 구체적 내용이 없어 이의신청이 어렵다는 피해자 단체의 지적을 반영하여 불송치결정서에 법률적·사실적 주장에 대한 판단 근거와 불송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고소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.
- 아동학대, 스토킹 등 범죄자에 대한 임시·잠정조치 신청에 대해서도 검사가 필요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.

□ 반복되는 사건 핑퐁을 줄여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, 부실수사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완수사요구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.

-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 이행 결과 통보 전에 검사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보완수사요구를 줄이고, 검사는 7일 내에 신속하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.
- 또한, 보완수사 결과 통보시 송부하는 ‘종합수사 결과보고’의 기재 내용을 구체화*하여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 이행 완결성을 높이고, 보완수사 이후에는 검사가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* 기존 수사결과와 증거관계, 보완수사의 진행 내용, 수사결과가 변경된 경우 그 취지와 이유 등 기재

- 아울러,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 이행 기간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사법경찰관에게 고지하고,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보완수사 이행기간 관리 방안을 신설하였습니다.

□ 효율적인 형사사법 절차 운영으로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하여
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.

○ 먼저,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중대 사건이 발생한
경우 합동 대응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 수사기관은 합동
수사단을 구성하고, 공소청은 이에 상응하는 전담 부서 또는 전담 검사를
지정하여 검사와 합동수사단이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○ 공소시효 만료일이 6개월 이내인 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
의무적으로 상호 협력하도록 하여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,
공소시효가 도과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※ (현재) 선거사건만 시효 만료 3개월 전 의무적 협력 → (개정안) 일반사건은 6개월 전, 선거
사건은 3개월 전 의무적 협력

○ 또한,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면
검사는 신속하게 의견을 회신하고, 검사가 공소유지를 위해 사법경찰관의
공판 재정(在廷)을 요청하면 사법경찰관은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.

○ 그 외에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 대상인 '중요사건'에 금융·증권,
공정거래, 기술유출, 해양범죄 등 검사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전문
사건을 추가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.

□ 사법경찰관 수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그 권한이 남용되지 않고
적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.

○ 사건을 수사한 사법경찰관에게 다시 보완수사요구 또는 재수사요구를
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상급 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
보완수사·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는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.

○ 검사의 보완수사·재수사요구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아 직무배제 또는
징계 요구를 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은 1개월 내에 직무배제 처리결과
및 징계의결 요구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
- 또한, 검사가 다른 범죄를 발견하여 수사요청을 하거나 직무수행 중 사법경찰관의 직무범죄를 발견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경우, 수사기관은 3개월 내에 조사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.

□ 수사절차의 투명성 강화와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구체적 이행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.

- 피의자 조사 과정 녹음 제도, 압수·수색·검증 과정의 영상녹화 제도의 실행 방안과 절차 및 예외 사유 등을 구체화하여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.
- 또한, 피의자의 인권보장 및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 도입된 검사의 “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제도”와 “사실관계 확인 제도”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출석, 화상, 전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면담·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

□ 마지막으로,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최대 90일간 계속 수사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.

- 송치 사건 중 ▲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, ▲검사가 체포·구속영장 또는 신체 또는 주거 등에 대한 압수·수색·검증영장을 청구한 사건, ▲피의자 또는 범죄사실이 상호 관련되어 통일적 사건 처리가 필요한 사건 등에 대해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90일간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
※ 검사가 ‘수사 개시’한 사건 중 최대 90일간 계속 수사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함께 입법 예고한 「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」(대통령령) 부칙에서 규정

3. 「특사경 협력규정」 주요 내용

-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 폐지에 따른 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검사의 지도·조언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-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·조언을 존중하여 수사에 반영하여야 하고, 정당한 이유 없이 지도·조언에 응하지 않은 경우 검사의 보완 수사요구 및 시정조치요구 대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.
-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전문성과 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사·예산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.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사법경찰관이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,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며, 인사 우대조치를 통해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
- 특히, 특별사법경찰관이 전문성을 갖춘 분야에서는 다른 수사기관과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,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하였습니다.
-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담당하는 분야에서도 효율적으로 형사사법 절차가 운영되도록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.
- 공소청이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, 일반적 지도·조언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.
- 특별사법경찰관도 검사의 공소유지에 협력하기 위하여 공판기일에 재정 하는 등,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의 성격에 반하지 않는 한 「수사준칙」 개정안 내용은 특별사법경찰관에게도 적용됩니다.

4. 향후 계획

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기관과 전문가,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하게 제·개정 절차를 마무리하여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	검찰국 검찰개혁지원TF	책임자	단장	김준선	02-2110-4612
		담당자	검사	정성두	02-2110-4614
담당 부서	검찰국 형사기획과	책임자	과장	조재철	02-2110-3545
		담당자	검사	한웅세	02-2110-3718



별첨1

개정 형사소송법 및 수사준칙 개정안 주요 내용

구 분	주요 내용
① 중요사건 협력절차 (§7)	▶ 검·경 협력관계 재정립(법 제195조) · 검사는 공소제기·유지, 사경은 수사를 책임 / 상호 협력의무는 유지 ■ '중요사건'에 금융·기술유출 등 범죄, 공무원 직무범죄,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추가 ■ 공소시효 6개월 이내 사건을 "의무적" 협력 대상에 추가 ■ 공소청과 수사기관 간 중대사건에 대한 합동 대응 근거 마련 - 공소청과 수사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합동 대응 사건 지정 가능 - 수사기관은 합동수사단 구성 / 공소청은 전담검사 및 전담부서 설치 - 검사와 사경은 긴밀하게 협의 / 수사기관 장은 구성·현황·결과 등 국회 보고 ■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경의 공판재정 등 지원 요청
② 사경의 의견요청 (§8의3)	▶ 검사 의견요청 제도 신설(법 제195조③) · 사경의 검사 의견요청권 및 검사의 응할 의무 신설 ■ 사경은 사건 개요·쟁점·검토의견 등을 서면으로 요청 ■ 검사는 신속하게 의견 회신, 사경은 검사 의견을 존중하여 수사 ■ 검사의 의견 수용 여부 등 기록 편철
③ 피의자신문 녹음 (§26의2)	▶ 피의자신문 등의 녹음 제도 신설(법 제244조의6) · 신문 전 과정 녹음 가능, 조사·면담 중 피의자·변호인 요청 시 녹음 의무 ■ 녹음·영상녹화의 개시·종료, 중단·재개 및 고지사항 등 절차 구체화 ■ 피의자·변호인의 녹음 요청방법 및 요청사실 기록절차 규정
④ 구속 전 피의자 면담 (§29의2)	▶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면담 제도 신설(법 제201조⑦·⑧) · 검사의 피의자 면담 및 사경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 근거 신설 ■ 체포 피의자 호송 등 사경 협조의무, 출석·화상·전화 등 면담 방법 규정
⑤ 압수·수색 영상녹화 (§38의2)	▶ 압수·수색·검증 전 과정 영상녹화 의무 신설(법 제220조의2) ·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영상녹화, 기록 편철·전산시스템 등재 ■ 영장 제시·집행 과정·압수물 발견·목록 교부 등 영상녹화 범위 구체화 ■ 장비 부재·긴급한 집행 등 영상녹화 예외사유 구체화
⑥ 구제신청 안내 (§47)	▶ 고소인등에 대한 구제신청 안내의무 신설(법 제197조의3⑨) · 수사 개시 시 고소인 등에게 검사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 안내 ■ 우편·팩스·전자우편·문자 등 안내방법 및 안내사실 기록 절차 구체화 ■ 피해자 특정 곤란·연락 불가 등 안내 예외사유 구체화
⑦ 사실관계 확인 (§65의3)	▶ 검사 사실관계 확인 제도 신설(법 제245조의13) ·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을 위해 사건관계인·사경 등의 의견 청취 가능 ■ 사건관계인·전문가·사경의 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절차 규정 ■ 피의자 의견 청취 시 변호인 조력권 고지

⑧ 보완수사 요구 (\$59~\$61의2)	▶ 송치 사건 보완수사요구 실효성 강화(법 제197조의2) • 1개월 내 충실 이행(기한 연장 가능), 사건번호 유지 • 결과 통보 전 종합수사결과 송부 및 검사 의견제시 절차 신설 • 부실이행 시 상급·다른 수사기관 지정 등 신설 ■ 임시·잠정조치 등을 보완수사요구 대상에 포함 ■ 영장 청구와 함께 보완수사사항에 대한 검사 의견제시 절차 신설 ■ 사경은 결과 통보 전 종합수사결과·기록 송부, 검사는 7일 내 회신 원칙 ■ 미이행·부실이행에 대한 이행관리 및 직무배제·징계요구 절차 강화
⑨ 재수사 요구 (\$63)	▶ 불송치 사건 재수사요구 강화(법 제245조의8) • 3개월 내 요구하되 추가 재수사요구 및 상급·다른 수사기관 지정 가능 ■ 3개월 경과 후 재수사요구 가능한 예외사유 확대 - 새로운 증거, 자료 누락, 수사 공정성 훼손 등을 예외사유로 규정
⑩ 고발인 이의신청 범위 (\$53의2)	▶ 고발인의 불송치 이의신청권 확대(법 제245조의7②) • 직접 이해관계 있고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에게 이의신청 허용 ■ 불송치 취지·이유, 불송치결정서 및 이의신청 안내·서식 등 통지 내용 구체화 ■ 무고·위증·법왜곡·직권남용·문서위조 등 대상 범죄 구체화
⑪ 압수물 처리 (\$43의2)	▶ 압수물 환부·가환부 절차 변경(법 제218조의2) • 사경이 처분하되 검사 의견을 듣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따를 의무 신설 ■ 검사 의견요청·회신 및 재의견 요청 절차 구체화 ■ 대가보관·폐기·피해자환부 등에도 동일 절차 적용
⑫ 수사요청 (\$65의2)	▶ 검사 수사요청·사경 직무범죄 통보 제도 신설(법 제245조의9) • 다른 범죄 혐의 발견 시 수사요청, 사경의 직무 관련 범죄혐의 발견 시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 ■ 수사기관은 검사 수사요청 사건 수리 및 입건 여부 검토, 3개월 내 처리 원칙 ■ 사경 직무범죄 통보 사건의 수리·조사 및 결과 통보, 3개월 내 처리 원칙
⑬ 부칙	▶ 시행 당시 검사 수사사건에 대한 경과조치(법 부칙 제12조①) •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 중 불가피한 사건은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계속 수사 가능 ■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는 '불가피한 사건'의 구체적 범위·기준 규정 -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사건 - 송치 후 검사가 체포·구속영장 또는 주거지 등 압수·수색영장을 청구한 사건 - 피의자 또는 범죄사실이 상호 관련되어 일부만 보완수사요구·이송할 경우 통일적 사건 처리가 곤란한 사건 - 사건 성질·수사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검사의 계속 수사가 필요한 사건 ※ 검사 수사개시 사건(「공소청법」 부칙에서 90일까지 직무수행 허용)의 경우 「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」(대통령령) 부칙에 같은 취지로 규정 예정

별첨2

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 주요 내용

구 분	주요 내용
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 (§3)	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제도와 여건 마련 및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규정 신설 ■ 국가 등에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인사·처우 등 우대조치 근거 마련 ■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특사경 소속 기관의 장에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 규정 신설
② 일반사경 수사규정 준용 (§5)	■ 검사와 일반사경의 협력관계 규정, 일반적 수사절차 규정 등은 「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」 최대한 준용 ■ 수사의 기본원칙, 수사 통칙, 임의수사 및 강제수사, 시정조치요구, 보완수사 요구,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검사의 의견 청취 절차 등 준용
③ 수사의 협조 (§8)	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다른 사법경찰관리에게 피의자 체포·출석요구·조사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협력 요청 및 요청에 적극 협조할 근거 명시 ■ 특정 범죄의 중점 단속 또는 합동수사 등을 위하여 다른 수사기관(특사경, 일반사경 모두 포함)과 합동수사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 마련
④ 수사공소유지 등을 위한 지원·협조 (§12, §15, §19, §35, §36)	■ 공소청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전문성 향상, 사법경찰직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한 수사 관련의 지원·협조 근거 마련 ■ 중요사건 수사개시 통보를 통해 협력 제고 ■ 공소청장 등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지도·조언 지침 수립 목적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실태 관련 자료 협조 규정 신설 ■ 공소유지 목적의 특별사법경찰관의 공판기일 재정(在廷) 지원, 필요시 공소유지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 협조
⑤ 지도·조언 (§19~§23)	■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도·조언 요청 및 검사의 직권에 의한 지도·조언으로 상호 협력관계 구체화 ■ 지도·조언 및 그 요청은 원칙적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되, 긴급을 요하는 경우 구두 또는 유선의 방법도 허용하며, 지체없이 서면화 하도록 하여 수사기록 누락 방지
⑥ 지도·조언의 기간 및 사건 처리 (§24, §25)	■ 검사가 공소시효 완성 임박 등 신속한 사건 처리가 필요로 인해 기한을 정한 지도·조언을 하였을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에게 기한 내 이행토록 규정 ■ 특별사법경찰관의 기한 내 미이행 시 사유 소명, 기일 연장 요청 및 수사 지연 시 사유 설명 등 신속한 수사를 위한 제도 마련 ■ 지도·조언 사건은 검사의 지도·조언을 존중하여 수사에 반영하고,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유로 검사가 지도·조언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구체적 사유를 의견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규정
⑦ 고소사건 수사기간 (§29)	■ 개정 형사소송법 제238조에 따라 고소·고발사건의 수사 기한 설정 ■ 고소·고발사건의 수사기간 내 수사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검사의 지도·조언을 통해 부당한 사건지연 방지
⑧ 부칙	■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제3호 나목에서 위임한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(수사 및 공소 업무에 대한 전자적 관리)의 시행일을 2029년 8월 3일로 규정